

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584호
- 나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다. 제안일자 : 2020년 5월 25일
- 라. 회부일자 : 2020년 5월 29일

2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·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 산하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사업체에 대한 신용보증을 시행 중임.
- 나.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보증공급이 급증하여 법상 보증공급 한계치 도달이 예상되며, 이에 따라 지속적인 보증공급 시행을 위한 보증재원을 2020년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출연코자 하며
- 다.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대상기관 : 서울신용보증재단

나. 주요사무 : 소기업·소상공인의 신용보증,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및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사업

다. 추진근거

- 지역신용보증재단법
-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라. 출연의 필요성

-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따른 보증공급 급증으로 법상 보증공급 한계치 근접, 안정적인 보증 환경 악화 예상
-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보증채무 부담을 위해, 출연금 출연을 통한 기본재산 증액 필요

4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강상원)

가. 동의안의 개요

- 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보증지원의 급증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가 법정 최고 한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인 보증공급을 위해 추가 출연하기에 앞서,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¹⁾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1)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나. 서울신용보증재단 추가 출연의 적정성

- 서울신용보증재단(이하 “재단”)은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, 「서울특별시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근거로 1999년 설립되어, 담보력이 부족한 서울소재 소상공인의 채무 보증과 원활한 자금유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음.
- 서울시는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보증정책의 목표달성과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(6.3배)²⁾ 유지를 위해 90억원³⁾을 출연하였음.
- 그러나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특별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, 제1회 추가경정예산(2020.3.24.)을 통해 36억 6천 5백만원⁴⁾, 제2회 추가경정예산(2020.5.8.)을 통해 500억원을 추가 출연하였음.
- 이와 같은 보증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민생위기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,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83억원을 추가 출연할 예정임.

2) 재단은 보증지원에 따른 부실액 감당을 위한 적정 운용배수(보증잔액 대비 기본재산 비율)로 5~7배를 유지해 왔음.

3) 보증재원 69억 2천만원/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20억 8천만원

4) 코로나19 피해기업 보증지원 급증으로 발생한 업무처리 지연문제 해결을 위한 시니어 기간제 인력 인건비 6억 6천 5백만원/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한 특별보증재원 30억원

< 2020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 현황 >

(단위 : 백만원)

3차 추경예산(안)	2차 추경예산	1차 추경예산	2020년 본예산
80,965 (+18,300)	62,665 (+50,000)	12,665 (+3,665)	9,000

- 재단의 보증공급 실적을 살펴보면, 코로나19 특별보증에 대한 높은 수요로 인해 이미 연간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, 운용배수는 9.9배에 이릅니다.

< 2020년 신용보증 공급 실적 >

(5.31. 기준, 단위 : 건, 억원, %)

구 분		2019년 추진실적	2020년		
			연간계획	실 적	달성률
보 증 공 급	건 수	68,556	61,000	119,582	196.0%
	금 액	18,780	20,000	37,258	186.3%
보 증 잔 액	건 수	211,023	243,000	306,360	-
	금 액	42,377	47,000	69,661	-

- 현재 진행 중인 보증과 신규 예상 보증을 감안하면 12월 말 예상 잔액은 8조 3천 5백억원, 예상 운용배수는 13.1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해,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 보증 한도(15배)⁵⁾의 한계치에 근접할 것으로 우려됨.

5) 「지역신용보증재단법」 제19조(보증의 한도) ①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(移越利益金)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 예상 보증잔액 산출내역6) >

(5.31. 기준, 단위 : 억원)

구 분	직접보증	위탁보증	합 계
'19년말 보증잔액 (A)	42,377	-	42,377
'20년 보증공급 (B) [a+b+c+d]	42,436	12,730	55,166
1.1.~4.30. 공급 (a)	25,678		25,678
4.30 현재 진행 중 (b)	4,127	-	4,127
*추가진행 보증 (c)	12,631		12,631
기업은행 초저금리 (d)	-	12,730	12,730
보증해지 (C)	14,000	-	14,000
가해지	9,974	-	9,974
예정	4,026	-	4,026
'20년 12월말 보증잔액 (A+B-C)	70,813	12,730	83,543

* 추가진행(6월~12월) : 코로나 정책자금(골목상권119, 대환대출) 1,676억원
+ 6월 이후 신규보증 10,955억원

⇒ 6월 이후 신규보증 추산 : 18,780억원(2019년 보증실적)/12개월x7개월

* 위탁보증 :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관련 보증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12월말 기준 예상 기본재산 : 6,373억원 - '19년말 6,388억원 + 출연금1,827억원 + 수익653억원 - 비용2,495억원 ▶ <u>12월말 기준 예상 운용배수 : 13.1배(83,543/6,373)</u> ▶ 183억원 출연시 예상 운용배수 : 12.7배 - 12월말 보증잔액 83,543억원 / 12월말 기본재산 6,556억원 = 12.7

※ 수익(이자 등) 및 비용 항목(대손충당금, 대위변제준비금)은 1년분을 월할 계산

6) 5월 31일 기준으로 산출한 보증잔액 및 운용배수로, 출연 동의안의 산출근거와 차이가 있음.
이는 재단이 보증 해지전담팀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보증지원금액 감액 유도 및 전환, 반송하여, 보증여력을 확대함에 따른 것임.
(해지금액 9,974억원, 반송금액 8,376억원으로, 총 1조8,350억원 보증잔액 감소/ 운용배수 2.6배 ↓)

-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 취약경제주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보증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, 출연금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, 시급성이 인정됨.
- 다만 이번 183억원 출연 이후에도 운용배수는 12.7배로 예상되어 여전히 적정 운용배수(5~7배)의 2배에 달하며, 코로나19와 미·중 분쟁 등 글로벌경제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면 경기 침체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수 있어, 올해 보증실적은 예상치⁷⁾를 상회할 가능성이 있음.
 -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국내총생산(GDP) 성장률 전망치를 $\Delta 0.2\%$ 로 하향 조정했으며, 이는 금융위기인 2009년($\Delta 1.6\%$) 이후 11년만으로,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경제의 악영향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⁸⁾.
- 「은행업 감독규정」에 따르면 위험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이 10.5% (보증기관은 운용배수 9.5배) 이하인 은행은 배당을 제한받고, 8%(보증기관은 운용배수 12.5배) 이하인 은행은 경고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음.
- 따라서 재단은 최소 12배 이하의 운용배수를 유지하는 것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며, 이 경우 406억원의 출연금이 필요하게 됨.

7) 6월 이후 신규보증 추산 : (2019년 보증실적)/12개월x7개월 = 18,780억원

8) 지난 2월 성장률 전망치는 2.1%

- 안정적인 공공 정책자금을 통해 민생안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재단 출연에 대해 적극적인 재정책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담당 조사관	연락처
김나래	02-2180-8057